

과 목	부동산공시법	담 당	양기백 교수
수 업 과 정	입문 무료특강	수 업 일	2020년 11월 28일 (토)

[토지등기기록 양식]

[토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신동 107-18

고유번호 1135-1982-067211

【표제부】			(토지의 표시)		
표시번호	접 수	소재지번	지 목	면 적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전2)	1982년 9월9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신동 107-18	대	432.6㎡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6 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7월 9일 전산이기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전3)	소유권 이전	1997년 2월19일 제6782호	1997년 2월5일 매매	소유자 김명자 550228-2067890 서울 서대문구 대신동 107-18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6 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7월 9일 전산이기	

【을구】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전10)	근저당권 설정	2001년 5월4일 제21099호	2001년 5월 3일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45,600,000원 채무자 김명자 서울 서대문구 대신동 107-18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110111-0023393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203 (평창동지점) 공동담보 동소 동번지 건물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7월 11일 전산이기	

2호선 강남역 9,10번 출구	해커스 공인중개사 land.Hackers.com	1588- 2332
------------------	-------------------------------	------------

[건물등기기록 양식]

[건물]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신동 107-18

고유번호 1135-1993-167211

【표제부】			(건물의 표시)	
표시번호	접수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	건물내역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전2)	1993년 5월20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신동 107-18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83.49㎡ 지하실 22.15㎡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6 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7월 11일 전산이기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전3)	소유권이전	1997년 2월19일 제6782호	1997년 2월 5일 매매	소유자 김명자 550228-2067890 서울 서대문구 대신동 107-18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6 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7월 9일 전산이기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전1)	근저당권설정	2001년 5월 4일 제21099호	2001년 5월 3일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45,600,000원 채무자 김명자 서울 서대문구 대신동 107-18 근저당권자 주식회사우리은행 110111-0023393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203 (평창동지점) 공동담보 동소 동번지 토지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6 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7월 11일 전산이기

2호선 강남역 9,10번 출구	해커스 공인중개사 land.Hackers.com	1588- 2332
------------------	-------------------------------	------------

[구분건물등기기록 양식]

고유번호 1313-1998-004323

【표제부】 (1동의 건물의 표시)					
표시번호	접 수	소재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	건물내역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1998년 4월 15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29,32 현대아파트 가동	5층 아파트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층 637㎡ 2층 637㎡ 3층 637㎡ 4층 637㎡ 5층 637㎡	도면편철장 제5책 제75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표시번호	소재지번		지 목	면 적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1.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29, 2.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32,		대 대	1759㎡ 745㎡	1998년 4월 15일

【표제부】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표시번호	접 수	건물번호	건물내역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1998년 4월 15일	1층 제101호	철근콘크리트조 96㎡	도면편철장 제5책 75면
(대지권의 표시)				
표시번호	대지권종류		대지권비율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1. 소유권대지권 2. 임차권대지권		1759분의 47 745분의 47	1998년 4월 5일 대지권 1998년 4월 5일 대지권 1998년 4월 15일 등기

해커스 공인중개사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소유권보존	1998년 4월 15일		소유자 김기수 650101-1237777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30
2	소유권이전	1999년 3월 5일 제456호	1999년 2월 4일 매매	소유자 김갑돌 750808-1237567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100
3	소유권이전	2007년 5월 5일 제3456호	2007년 4월 4일 매매	공유자 지분 2분의 1 김일남 560106-1924567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자동 31 지분 2분의 1 김이남 580921-1923476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89 거래가액 금 400,000,000원
4	4번 김이남지분 2분의 1중 일부(4분의1) 이전	2009년 9월9일 제7843호	2009년 8월 1일 매매	공유자 지분 4분의 1 박갑수 700911-1381821 서울특별시 중구 저동 100 거래가액 금 120,000,000원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전세권설정	2019년 3월 5일 제3005호	2019 3월 4일 설정계약	전세금 50,000,000원 범 위 건물전부 전세권자 최병식 580114-1057329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6길 5 (인사동)
1-1	1번 전세권 이전	2019년 6월 5일 제8765호	2019년 6월 4일 매매	전세권자 이정달 601210-1047325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12(원 서동)

2호선 강남역 9,10번 출구	해커스 공인중개사 land.Hackers.com	1588- 2332
------------------	-------------------------------	------------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토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29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 번호	등기목적	접 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소유권보존	(생략)		(생략)
2	소유권이전	(생략)	(생략)	(생략)
3	소유권 대지권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29외1필지 현대아파트 가동 1998년 4월 15일 등기

< 관련 기출문제 >

1. 등기부 표제부의 등기사항인 표시번호는 등기부 갑구(甲區), 을구(乙區)의 필수적 등기사항이 아니다. (31회) (O)
2. 등기관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원인의 연월일을 기록한다.(29, 30, 31회) (X)
3. 등기기록 중 다른 구(區)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순위번호에 따른다. (31회) (X)
4. 등기할 건물이 구분건물인 경우에 등기관은 1동 건물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소재와 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를 기록하고, 전유부분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건물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31회) (O)

2호선 강남역 9,10번 출구	해커스 공인중개사 land.Hackers.com	1588- 2332
------------------	-------------------------------	------------

5. 같은 지번 위에 1개의 건물만 있는 경우에는 건물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건물번호를 기록하지 않는다. (31회) (O)

6. 갑구 순위번호 2번에 기록된 A의 공유지분 4분의 3 중 절반을 B에게 이전하는 경우, 등기목적란에 “2번 A 지분 4분의 3 중 일부(2분의 1)이전”으로 기록한다. (29회) (X)

7. 등기관이 구분건물의 대지권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소관청의 촉탁으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에 소유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이 대지권 이라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29회) (X)

8. 채무자와 저당권설정자가 동일한 경우에도 등기기록에 채무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28회) (O)

9. 구분건물등기기록에는 표제부를 1동의 건물에 두고 전유부분에는 갑구와 을구만 둔다.(27회) (X)

10. 소유권외의 권리의 이전등기는 부기등기이다. (28회) (O)